#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5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주진우·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배현진 • 백종헌 • 서명옥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유용원·윤상현·윤영석 윤재옥·윤한홍·이달희 이만희·이상휘·이성권 이양수·이인선·이종배 이종욱·이철규·이헌승 인요한·임이자·임종득 장동혁·정동만·정성국 정연욱·정점식·정희용 조경태·조배숙·조승환 조연희·조정훈·조지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추경호·한기호·한지아 의원(108인)

####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음.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각 국회 입법기별로 평균 3건도 안되게 탄핵소추 권한이 신중하게행사되어 왔으나, 제21대 국회에는 총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는 개원한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무려 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들어 탄핵소추 발의가 무분별하게 남 발되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더구나 직무를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행정기관의 장을 연속적으로 탄핵소추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기능 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고, 검사가 국 회의원 자신이나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수사를 했다 는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등 탄핵 소추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사태로 인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 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 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 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 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 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핵소추 권한의 남용 금지의 원칙 명시(안 제3조)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명시(안 제4조)

탄핵소추 대상 공직자가 해당 공직의 직무를 개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이지나기 전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 다.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시의 탄핵소추 요건 명시(안 제5조)
  - 1) 탄핵소추 대상자의 궐위나 사고 등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를 못하도록 하되, 직무대행 전의 직위가 탄핵소추 대상인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함.
  - 2)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경우로서 직무대행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직무대행 전의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소추 요건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라.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6조)
  - 1) 국회의원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 등이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 지를 도모함.

- 2) 정당이나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 등이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 마. 탄핵소추 시효 제도 마련 및 탄핵심판 청구 요건의 강화(안 제7 조)
  - 1)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함.
  - 2)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탄핵소 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탄핵심판 청 구 요건을 추가함.
- 바.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8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공직자에 대하여 해당 탄핵심판 청구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중복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사.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규정 마련 (안 제9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 및 그밖에 탄핵심판 청구 및 수행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규정 마련(안 제10조)
  - 1)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공직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될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납부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2)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의 기초가 되는 탄핵소추 발의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거나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분별한 탄핵소추의 남용으로 인하여 행정, 수사, 사법, 감사 등 국가의 주요 기능에 마비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국가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탄핵소추 권한의 남용 금지의 원칙)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탄핵소추 대상 공직자가 해당 공직의 직무를 개시(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한다.
- 제5조(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금지 등) ① 탄핵소추 대상자의 궐위나 사고 등으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한다. 다만,

직무대행 전의 직위가 탄핵소추 대상인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경우로서 직무대행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직무대행 전의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소추 요건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① 국회의원은 자신 또는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수사처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한다.
  -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이나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수사처검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한다.
- 제7조(탄핵소추 시효 등) ①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 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공직자에 대하여 해당 탄핵심판 청구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한다.
- 제9조(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 및 그 밖에 탄핵심판 청구 및 수행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2.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②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하여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 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공직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될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 1.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 2.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의 기초가 되는 탄핵소추 발의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연대 부담·납부 책임) ①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정당은 제9조에 따른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과 제10조에 따른 공탁금의 납부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정당의 부담 비율은 각 정당 소속의 탄핵소추 발의자 총 수에 따른다.
- 제12조(연대 부담·납부 책임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11조의 연대 부담 및 납부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